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5.8)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연석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2
8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29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기구신설(안 제3조)
 - 명 칭 : 규제개혁추진단
 - 소 속 : 부군수 직속
 - 설치기간 : 설치일부터 1년(한시기구)
- 나.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규제개혁추진단
 - 사무인수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 사무이관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04. 1. ~ 2014. 04. 2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3.5.,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3)
 - 658명 → 668명(증 10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이하 정원 : 증 10명
 - 현행 : 586명(본청265명), 의회11명. 직소기관91명, 사업소41명, 읍37명, 면137명
 - 조정 : 596명(본청275명), 의회11명. 직소기관91명, 사업소41명, 읍37명, 면137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268백만원 기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4. 01. ~ 4. 2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5. 검토의견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3.5.,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군의원 위촉 및 제척규정 삭제함
(안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 (삭제)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위촉
 - (삭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 제척
 -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 나. 경상남도 개선권고 사항 반영함(안 제10조제4항후단)
 - (삭제)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4. 3. 21. ~ 4.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나.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확정되어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마리면 대동리의 행정리를 조정함(안 별표 2)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 나. 마리면 대동리 이장의 정수를 조정함(안 별표 2)
 - 4명 ⇒ 5명(증 1명)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나. 예산조치 : 2014년 2회 추경시 2,28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4. 2. 17. ~ 3.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확정되어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동·서편 마을을 1개 행정리로 통합운영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 대상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기간 : 각각 10일
 - 사용방법 : 한 번만 분할 사용,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음
복무관리부서 사전허가 거쳐야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4. 2 ~ 4.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2014. 1. 1.)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 (현행) 2013년 12월 31일 ⇒ (변경) 2014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3. 05. ~ 3.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2014. 1. 1.)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5.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2.

2. 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창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함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이용시설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운영 및 보급, 청소년의 창작·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다.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마.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바.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4. 23. ~ 5. 0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창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 적합·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35호, 2014.3.2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37호, 2013.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7.7.27.>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5. 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2.

2. 요구이유

- 월성 청소년 수련원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시설명 : 국민여가캠핑장
- 나. 위치 :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청소년수련원 내)
- 다. 규모

구분	캐빈 하우스	방갈로	야영 데크	방문자 센터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진입 도로	기타
면적 (수량)	4동 (42.61㎡) (170.44㎡)	3동 (31.53㎡) (94.59㎡)	14동 (5×5)	1동 (53.46㎡)	1동 (76.33㎡)	1동 (72.80㎡)	200m	부대 시설

※ 부대시설 :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 라. 사업내용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마. 대상사무

- 시설 : 국민여가캠핑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영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자. 예산지원 : 없음(캠핑장 사용료로 운영)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국민여가캠핑장을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캠핑장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5월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5월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5월말
- 위탁계약 체결 : 5월말
- 종사자 채용 : 6월초
- 개관운영 : 6월중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월성 청소년 수련원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